

## 결 정

2018 - 2018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2. 朝鮮日報 발행인 홍 준 호

## 주 문

매일경제 2018년 1월 19일 1면 「주한미군 평택시대/주한미군 주택과에서 매년 선불로 받는 렌탈료 \$42,000~\$45,000/해나카운티」 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1월 26일자 A13면 「주한미군 평택시대~/해나카운티 7차 분양!」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 이 유

매일경제, 朝鮮日報의 적시 광고들은 평택 미 군무원 전용 렌탈 하우스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이들 광고는 『매년 선불로 받는 렌탈료 \$42,000~\$45,000』, 『년 12~15%대의 안정적인 투자수익률』 이라고 선전하면서 『SOFA 협정으로 45년간 안정적인 임대수요 확보』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2월 7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원장	김용담	김용담	김용담
위원	정승호	정승호	정승호
	장명국	장명국	장명국
	이동현	이동현	이동현
	장인철	장인철	장인철
	김규식	김규식	김규식
	강희	강희	강희
	하윤수	하윤수	하윤수
	김영모	김영모	김영모
	박현갑	박현갑	박현갑
	박미경	박미경	박미경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